

수원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나11025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나1102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합246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청

담당변호사 최준용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원

변론종결 2022. 6. 10.

판결선고 2022. 7. 2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가합2466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9,38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토사운반대금 509,836,910원, 건설장비 대여대금 35,063,750원, 사토장 확보 및 작업비용 274,650,000원, 발파공사대금 7,670,820원, 과적 과태료 2,160,000원, 합계 829,381,48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토사운반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건설장비 대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사토장 확보 및 작업비용, 발파공사대금 및 과적 과태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토사운반대금 청구와 건설장비 대여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13행의 ‘2017. 12.경’

『 2018. 12.경 』

○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의 ‘1,833,335,161원’

『 1,833,445,161원 』

○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의 ‘㎡당’

『 ㎡당 』

○ 제1심 판결문 제7~8쪽의 ‘3.의 가. 2)’항 부분

『 2) 토사운반대금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토사운반대금의 산정방법에 의해 계산한 토사운반대금은

1,729,323,200원(자세한 산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고, 위 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금액은 1,833,445,161원이다1). 피고가 그 중 1,323,608,251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9,836,910원(= 1,833,445,161원 - 1,323,608,2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토질	덤프트럭 대수	단가	금액(덤프트럭 대수 × 단가)
일반토사	10.664	109,200	1,164,508,800
실트질 점토	840	118,800	99,792,000
불량토	4,473	118,800	531,392,400
풍화암	76	27,500	2,090,000
원석	2,445	-28,000	-68,460,000
계	18,498		1,729,323,200

3. 추가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원고에게 화성시 동탄 소재 ‘H건물 신축공사현장’, 오산시 소재 ‘I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아래에서 ‘오산 현장’이라고 한다)의 토사 운반 등을 도급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서 덤프트럭 대수를 기준으로 토사운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에서는 원도급사업자인 D이 실시측량을 기초로 작성한 도면에 따라 산출한 토사 물량을 기준으로 토사운반대금을 정산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오산 현장의 공사대금 청구내역서(거래내역서)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청구내역서(거래명세표)의 양식이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오산 현장의 거래내역서에는 ‘횟수 ×

단가 = 금액'의 형식으로 토사운반대금을 산정하고, 이 사건 공사의 거래명세표에는 '수량 × 루베 × 단가 = 금액'의 형식으로 토사운반대금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오산 현장의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횃수'와 이 사건 공사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수량'은 모두 토사를 운반한 덤프트럭 대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루베는 실제 운반한 토사의 수량을 일일이 산정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라 덤프트럭 1대당 일반 토사 및 불량토는 12루베, 풍암은 11루베, 원석은 10루베로 토사별 적재량을 미리 정하여 일괄하여 적용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더라도 오산 현장의 거래내역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덤프트럭 대수에 따라 토사운반대금이 산정되는 것인 점, 피고가 오산 현장 등에서 종전의 토사운반대금 산정 방식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어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는 토사운반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의사였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문언으로 명시하는 것이 경험칙 상 타당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서 오산 현장과 달리 덤프트럭 대수가 아닌 도면에 따른 토사 물량을 기준으로 토사운반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원도급사업자인 D로부터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D이 실시측량을 기초로 작성한 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토사 물량을 기준으로 토사운반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토사운반대금 산정방식도 위와 동일하게 도면을 토대로 산출한 토사 물량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설령 피고와 D 사이에 실시측량을 기초로 작성한 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토사 물량을 기준으로 토사운반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도급사업자인 D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불과할 뿐이고, 그와 같은 정산 방식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의 확인 서명을 받은 사토운반일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토사 운반 차량번호, 반출 시간, 운행 횃수만을 서로 확인하였을 뿐, 차량에 적재된 토사의 물량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도면을 토대로 산출한 토사 물량을

기준으로 토사운반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의 토사 반출 관련 도면이나 실시측량을 기초로 작성한 토사 반출 관련 정산 도면을 제공하는 것이 경험칙 상 타당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후로 원고에게 도면을 제공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심연수, 판사 유현중

1) 토사운반대금 1,729,323,2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은 1,902,255,520원이나, 원고는 1,833,445,161원만을 청구하였다.